
2026년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출자사업 FAQ

2026. 4. 15.

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

||| **목 차** |||

1. 제안서 접수(제출) 방법?	1
2. 자산운용사 외 신기사 등 지원자격?	1
3. 운용사 지원자격 AUM 산정기준?	1
4. 제출대상 펀드에서 투자일임, 해외투자 제외여부?	2
5. 일반, 인프라 중복지원 가능여부?	2
6. 출자신청서 상 운용사 출자확약액, 출자에정액 기재 방법?	2
7. 공고문 상 조특법 등 세제혜택 요건 충족 의무?	2
8.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주목적 ① 투자대상 및 방법	3
9. 상장 주식 운용 가능?	4
10. 수탁, 사무관리, 판매사 선정 및 보수 체계?	4
11. 운용 보수 수준?	4
12. 펀드 운용 시 투자회수 금액의 재투자가 가능한지?	5
13. 운용사가 출자자를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지?	5
14. 성과보수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?	5
15.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기재해야 하는지?	5
16.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에서 지방투자의 정의?	5
17. 펀드의 배분은 현물로 가능한지?	6
18. 국민연금가입증명 제출 대상?	6
19. 펀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?	6
20. 후순위 출자분을 운용사 펀드로 부담해도 되는지?	6
21. 제안펀드 운용 시 파생상품 운용은 가능한지?	6
22. 당사 및 지정출자자에 대한 보고 의무는 무엇인지?	7
23. 선정 후 지정출자자와 협의가 필요한지?	7
24. 공고문 상 손익배분 구조에서 운용사의 변경 제안 범위는?	7
25.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지?	7
26. 기타 출자자의 출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?	8
27. 일반사무관리회사 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?	8
28. 기타제안사항?	8

Q1. 제안서 접수(제출)방법?

- 제안서 등 제출서류 전체는 기한 내(‘26.4.17(금) 10시~16시) 한국성장금융 대면 제출
 - 위와 별도로 엑셀양식(4-2, 4-3, 4-5 시트) 및 텍스트파일은 한국성장금융, 한국펀드평가 앞 기한 내(‘26.4.17(금) 11시까지) 이메일* 제출

* shk@kgrowth.or.kr / kfric@kfr.co.kr

Q2. 자산운용사 외 신기사 등 지원자격?

- 공고문 상 명시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에 한함(신기사, 벤처투자회사 등 지원 불가)

Q3. 운용사 지원자격 AUM 산정 기준(주식, 혼합주식, 혼합채권, 혼합자산, 특별자산(인프라 限))?

- 자본시장법에 의한 펀드 분류로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참조
 -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(<http://freesis.kofia.or.kr>) → 펀드 → 회사별 설정규모 → 펀드(투자일임 제외) → 기준일(‘25.12.31.) → 순자산총액, 투자지역(국내), 펀드종류(전체), 공/사모구분(전체), 기금 전체(예)

- 아래 예시 참고

회사별설정규모

AUM(펀드+투자일임) 펀드 투자일임

최근일자: 최근일자 ▼ 2025-12-31

설정원본/순자산총액/펀드수: 설정원본 순자산총액 펀드수

투자지역구분: 전체 국내 해외 해외30 해외60

펀드종류: 전체

공모/사모구분: 전체 공모 사모

기금 전체: 예 아니오

※ 제출서식(excel) 상 작성방법 참조 및 한국펀드평가(02-399-3463) 문의

Q4. 제출대상 펀드에서 투자일임, 해외투자 제외해야 하는지?

- 제출대상 펀드도 AUM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투자일임, 해외투자는 제외하고 제출
 - 제출 대상 펀드 수가 많은 경우 제안서 요약본(PPT) 본문에는 전체 펀드를 요약하여 작성하고 전체 펀드 목록은 요약본(PPT) 마지막 페이지 이후 첨부로 반영
 - 제안서(한글, 워드)에는 본문에 전체 펀드 목록 포함하여 작성

Q5. 일반, 인프라 중복지원 가능여부?

- 동일 운용사가 독립된 조직 및 운용 인력으로 주목적 투자분야 ① 일반, ② 인프라 간 중복지원 하는 것은 허용
 - 단, 동일 주목적 투자 내 중복지원은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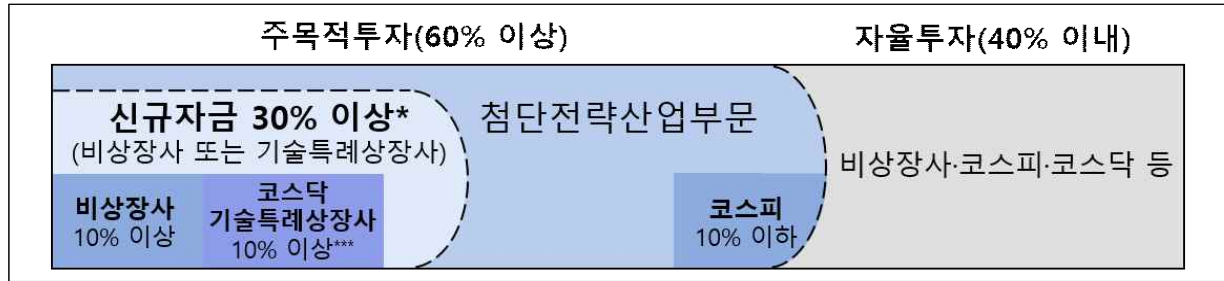
Q6. 출자신청서 상 운용사 출자확약액, 출자예정액 기재 방법?

- 출자신청서 상 운용사 출자확약액(목표 설정금액의 0.0% 후순위 출자)을 기준으로 운용사 출자금액 평가 및 반영, 출자신청서 상 출자예정액은 1순위 지망 기준으로 금액 기재 또는 공란(제안서 P15 동일)

Q7. 공고문 상 조특법 등 세제혜택 요건 충족 의무?

- 제안 펀드는 주목적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(예정 포함)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Q8.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주목적 ① 투자대상 및 방법?



-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신규자금으로 펀드 최초설정금액의 30% 이상 투자
 - 신규자금에는 비상장 10% 이상,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10%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나머지 10% 미만은 비상장사,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음(예시) ① 비상장사 20%,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10%, ② 비상장사 10%,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20%)
 - 신규자금 30% 이상은 최소 요건으로, 운용전략에 따라 주목적 투자금액 전체(60%)를 신규자금 투자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
-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(신규자금 구분없이) 최초설정금액의 30% 이내 투자
 - 신규자금 외에 상장시장(코스피, 코스닥)에서의 구주 거래도 주목적 투자로 허용되나, 코스피 거래는 최초설정금액의 10% 미만으로 제한
 - 주목적 투자 내의 제한 요건으로 주목적 투자는 신규자금 외로 30% 초과 불가(비주목적은 가능)
- 주목적 투자는 주식, 메자닌 등에 한하여 인정하며, 회사채(SB), 유동화증권 등 불포함
- 비주목적 40%는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투자

Q9. 상장 주식 운용 가능?

- 비주목적 40%, 주목적 30%를 활용할 경우 최대 70%의 상장주식 운용 가능

Q10. 수탁, 사무관리, 판매사 선정 및 보수 체계?

- 수탁, 사무관리, 판매사는 국민성장펀드(국민참여형)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일괄 선정할 계획으로 운용사는 3bp (가정, 변동 가능) 수준으로 고려하여 제안서 운용보수 책정 후 제출

Q11. 운용 보수 수준?

- 공고문 상 총보수는 연평균 NAV 60bp 기준으로 운용보수는 해당 총보수에서 수탁, 사무관리, 판매보수 3bp(가정)를 차감한 57bp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 자율 제시
 - * 운용전략 상 비상장, 메자닌, 상장주식 비중을 고려하여 보수를 제안할 수 있으며, 비상장, 메자닌 비중이 높을수록 기준 대비 보수율 증가, 상장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기준 대비 보수율 감소요인으로 일정수준 반영 가능
 - * 운용전략 상 비상장, 메자닌 투자 비중을 의무 비율 대비 상향하여 제안하는 경우, 제안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음
 - 인프라 펀드의 경우, 시장 내 인프라 펀드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제시
 - 운용사가 제안한 운용보수는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

Q12. 펀드 운용 시 투자회수 금액의 재투자가 가능한지?

- 재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정해지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정하며, 제안서 제출 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작성

Q13. 운용사가 출자자를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지?

- 출자자는 후순위 비율 등을 감안, 공고문상 명시된 자로 한정되는 바 추가모집 불필요

Q14. 성과보수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?

- 공고문 상 기재된 손익배분 구조에 따라 기준수익률 초과분에 대하여 선순위 출자자와 후순위 출자자간 초과수익 안분 후, 후순위 출자자 내 안분 비율에 따라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구조임

Q15.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를 기재해야 하는지?

- 출자신청서 상 기타 출자조건 제안에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는 기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적용됨

Q16. 운용사 추가 인센티브에서 지방투자의 정의?

- 지방투자 기준은 추후 정해지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정하며, 제안펀드 제출 시에는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

Q17. 펀드의 배분은 현물로 가능한지?

- 현금으로 배분해야 하며, 제안서 작성 시, 미회수자산의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

Q18. 국민연금가입증명 제출 대상?

- 제안 펀드 핵심운용인력에 한정

Q19. 펀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?

- 조특법 등 관계법령 준수, 주목적 투자 및 의무투자비율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며, 독립된 외부 기관을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음

Q20. 운용사의 후순위 출자분을 운용사가 운용 중인 다른 펀드로 부담해도 되는지?

- 불가함

Q21. 제안펀드 운용 시 파생상품 운용은 가능한지?

- 헤지 목적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가능. 구체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은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공고문 기재 범위 내에서 국민성장펀드 컨소시엄과 협의를 통해 확정

Q22. 당사 및 지정출자자에 대한 보고 의무는 무엇인지?

- 당사 및 지정출자자에게 출자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기적, 비정기적으로 보고

Q23. 선정 후 지정출자자와 협의가 필요한지?

- 공고문에 따른 주요 조건 외 세부 내용은 지정출자자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

Q24. 공고문 상 손익배분 구조에서 운용사의 변경 제안 범위는?

- 공고문 상 손익배분 구조의 기본 구조를 참고하여 출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변경 제안 가능하며, 선정 후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

Q25.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지?

- 가능. 코스닥벤처펀드 요건을 충족하여 공모주 우선 배정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(이 경우에도 공고문 상 주목적 투자 요건,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해야 함)
- 공모주 투자의 신규자금 투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정해지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정하며, 제안서 제출 시에는 미포함으로 작성
- 공모주의 투자기간(상장/상장 외)은 추후 정해지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정하며, 제안서 제출 시에는 상장으로 작성

Q26. 기타 출자자의 출자 약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?

- 출자 약속서 제출 불필요

Q27. 일반사무관리회사 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?

- 제안서 제출 시 일반사무관리회사 검증을 마친 펀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반드시 제출이 필요하며, 정보 제공 펀드 별로 사무관리회사가 다를 경우 사무관리회사 별 확인서 모두 제출

Q28. 기타제안사항

- 추후 확정되는 투자 가이드라인 등 제안 펀드 운용과 관련되어 제안 또는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(p16) 기타 사항에 기재